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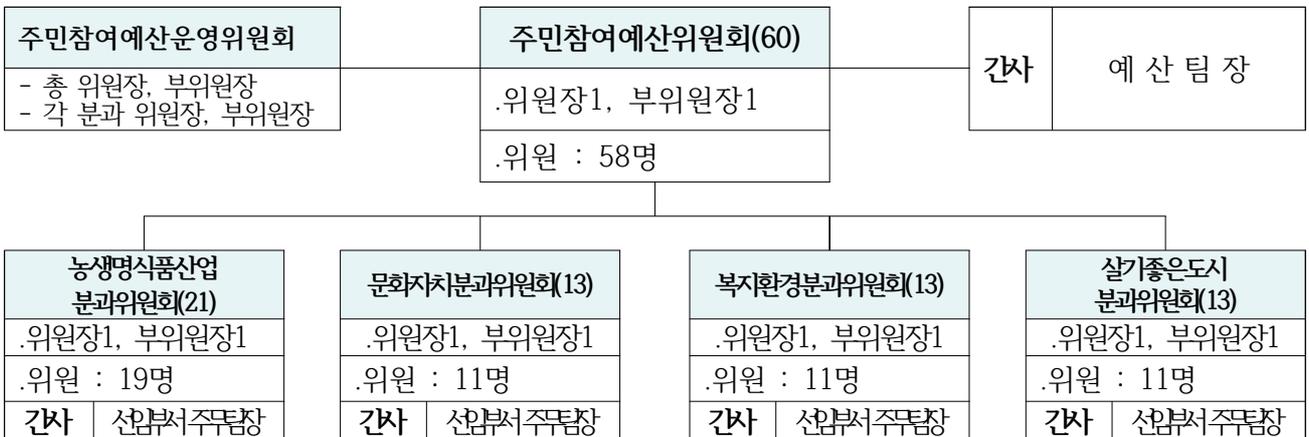
- 2022년 예산편성을 위한 - 2021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I 추진 방향

□ 형식적 의미의 주민참여를 탈피하고 실질적 주권자로서 주민이 직접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 투명성, 책임성 확보

II 구성 및 운영

□ 구 성 : 총 60명(4개분과)



주민참여예산분과위원회				
위 원 회	분과 선임부서	분 과 별 부 서	위 원	비 고
농생명식품산업분과위원회	해양수산과	농생명지원과, 농어촌식품과, 해양수산과, 축산과, 산림공원과, 농업기술센터	21	6과
문화지치분과위원회	종합민원과	문화예술과, 문화유산관광과, 종합민원과, 재무과, 율령행정과, 기획예산담당관, 체육청소년사업소	13	7과
복지환경분과위원회	상하수도사업소	사회복지과, 생태환경과, 상하수도사업소, 환경시설사업소, 보건소	13	5과
살기좋은도시분과위원회	상생경제과	상생경제과, 재난안전과, 건설도시과	13	3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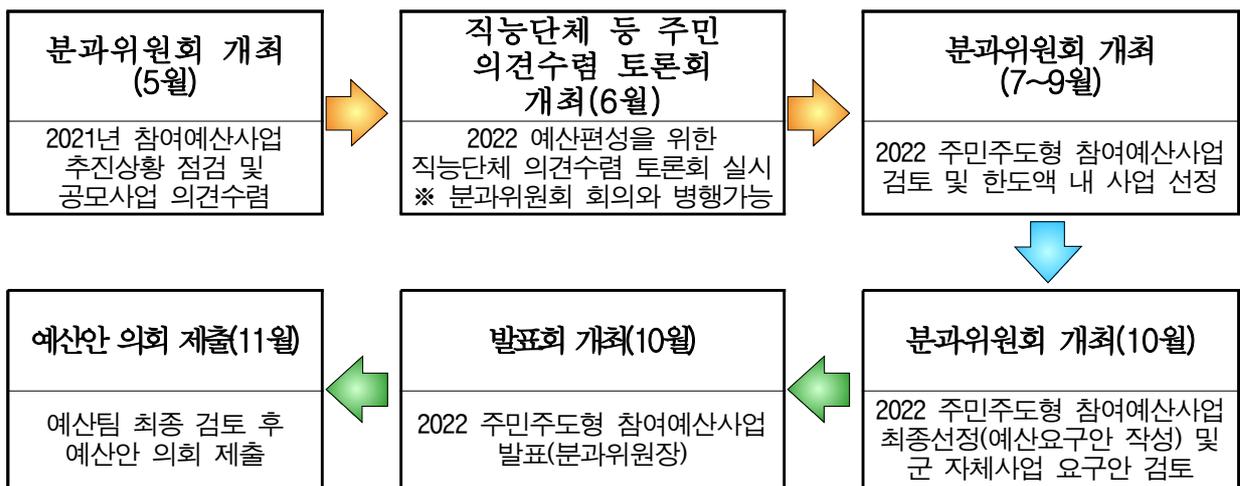
□ 위원회 역할 : 예산편성 및 사업추진 전과정에 참여

- 주민제안사업이 반영된 주민주도형 사업 예산요구안 작성 및 주민의견 제출
 - 제외사업 : 지방보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민간경상·자본보조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도로건설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인건비 및 법정경비 등
- 분과별 예산 한도액 내 직접적인 참여편성

구 분	편성 예산 한도액(백만원)
계	1,300
농생명식품산업분과위원회	455
문화자치분과위원회	195
복지환경분과위원회	195
살기좋은도시분과위원회	455

- 부서 주요사업에 대해 자문 역할 수행(부서요청→위원회 자문수행)
- 주민예산요구 수렴을 위한 토론회 개최 주관
- 주민참여예산사업 추진상황 검토 및 의견제시
- 기타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 ※ 위원회는 정치적·사적 목적 이용이 배제되며 군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군수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 안에서 활동

□ 분과위원회 업무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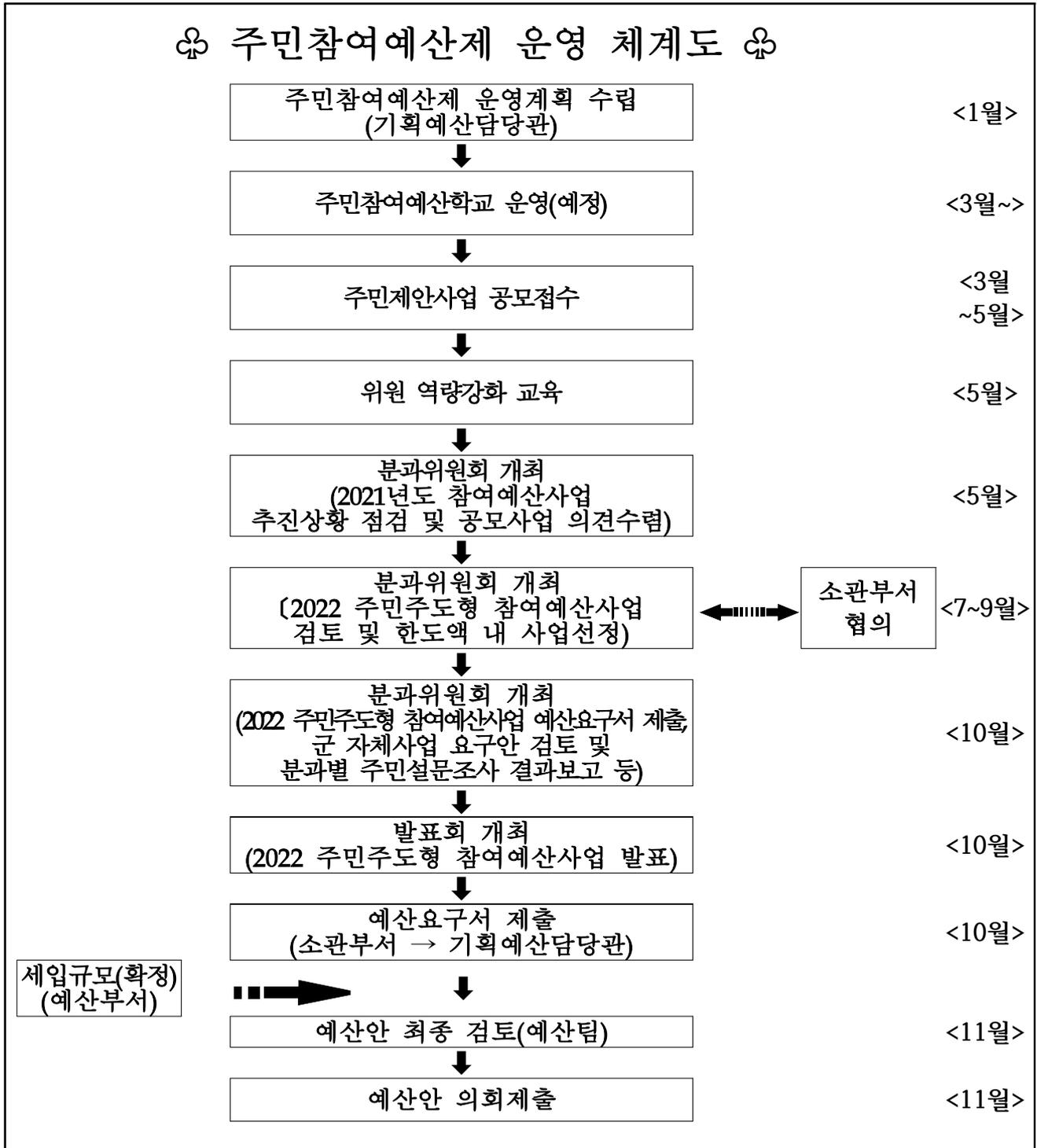
□ 위원회 의결방법

-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위원회 행정지원 사항

- 간사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무처리 등 지원
- 위원회의 회의운영, 토론회 개최, 주민예산교육 등 비용 및 장소 지원
- 공식 회의참석과 관련된 비용(참석수당 등) 지급가능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체계도



□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 고창군 주민참여예산학교 교육생 모집(2021. 2.)
- 고창군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2021. 3. ~)
 - 21년 상·하반기 총 4회 운영

- ❖ 대 상 : 참여예산위원(1), 일반군민(1), 청소년(1) 장애인(1)/ 1회당 3시간 내외
- ❖ 내 용 : 고창군 예산알기 참여예산제도 이해 사업제안 연습 및 토의 예산학교 수료증 수여 등

□ 주민제안사업 공모

- 공모기간 : 2021. 3. ~ 5.
- 공모분야 : 고창군 발전과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모든 사업
- 공모자격 : 고창군민, 고창군 내 기관 근무자, 고창군 영업소의 사업체 대표자 및 임직원
- 구비서류 : 주민제안사업 신청서

• 사업제안시 참고사항

- 군정시책 및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제안사업 신청
- 주민제안사업의 선정(우선순위)은 소관 사업부서와 협의(공공성, 중복 여부 등 판단)하에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 제외사업

- 민간보조사업을 포함한 모든 지원사업(민간경상·자본보조사업)
- 대규모 사업, 사전행정절차 이행으로 당해연도에 사업시행이 어려운 사업
- 기관·단체·개인 지원을 위한 경비 또는 소수의 이익을 위한 사업
- 인건비, 행사성 경비 등

□ 위원 역량강화 교육

- 기 간 : 2021. 5월 중
- 대 상 : 주민참여예산위원(60명)
- 내 용 : 주민참여예산학교와 병행하여 실시

□ 2021 주민주도형 참여예산사업 추진상황 점검회의

- 기 간 : 2021. 5.
- 대 상 : 4개분과
- 내 용 : 2021년 주민주도형 참여예산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2022년 주민제안사업(공모) 의견수렴

□ 2022 주민주도형 참여예산 편성을 위한 분과위원회 개최

- 기 간 : 2021. 6. ~ 9.
- 내 용 : 주민제안사업, 직능(민간·사회)단체 제안사업, 위원제안사업 중 예산한도액 내 사업편성

구 분	편성 예산 한도액(백만원)
계	1,300
농생명식품산업분과위원회	455
문화자치분과위원회	195
복지환경분과위원회	195
살기좋은도시분과위원회	455

※ 제외대상사업

- 민간보조사업을 포함한 모든 지원사업(민간경상·자본보조사업)
- 대규모 사업, 사전행정절차 이행으로 당해연도에 사업시행이 어려운 사업
- 마을안길포장, 마을 배수로 정비 등 소규모주민숙원사업
- 기관·단체·개인 지원을 위한 경비 또는 소수의 이익을 위한 사업
- 인건비, 행사성 경비 등

□ 주민참여예산 읍면지역회의 운영

- 운영기간 : 2021. 8. ~ 9.
- 역 할 : 예산 한도액 내 사업편성
- 구 성 : 위원장(읍면장) 및 민간위원
- 의결방법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읍면 예산 한도액 내 직접적인 참여편성(편성사업 및 우선순위 결정)

구 분	편성 예산 한도액(백만원)
계	3,000
고창읍	400(400*1개소)
13개면	2,600(200*13개소)

※ 읍면 자체 실시

□ 2022 주민주도형 참여예산 편성을 위한 최종회의 개최

- 기 간 : 2021. 10.
- 내 용
 - 2022년 주민주도형 참여예산사업 최종선정(예산요구안 작성)
 - 2022년 군 자체사업 예산요구안에 대한 검토 및 의견 제시

□ 주민참여예산 확정사업 발표회

- 발 표 자 : 분과위원회 위원장
- 기 간 : 2021. 10월 중
- 내 용 : 2022년 주민참여예산 확정사업 발표

□ 예산안 의회 제출

- 기 간 : 2021. 10월 중
- 내 용 : 최종예산안 의회 제출